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
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 기업으로 성장할 우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 니다.

> 2019년 5월 29일 한**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**

1. 모집개요

□ 모집규모

구분	보육실 면적
한밭인큐베이터타운(7社)	43.02(2실) m², 43.20(2실) m², 54.14 m², 59.64 m², 60.48 m²
대덕산학융합캠퍼스(4社)	50.80 m², 53.78 m², 82.64 m², 102.20 m²

_____ ※ 창업보육료 : 붙임 1 참조

모집기간 : 2019. 5. 29.(수) ~ 6. 6.(목)

□ 입주시기 : 2019년 7월 예정

※ 입주계약 체결 시 입주승인 및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을 고려하여 입주계약 체결

2. 신청 및 입주조건

구분	주요내용	
공통자격	-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입주 제외 대상 불가 ※입주 제외 대상 : 붙임2 참조	
한밭인큐베이터타운 대덕산학융합캠퍼스	- 예비창업자(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) - 창업 3년 이내의 중소·벤처기업	

3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방법 : 발표평가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
□ **평가항목**: 사업계획 타당성(30점), 기술성(30점), 시장성(20점), 대학연계성(10점)

국내 외 경쟁사분석(10점). 가점(최대3점)

※가점 :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가점 기준

선정기준 :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 값으로 산정하고 합계 순위에 따라 입주 선정

□ 우대사항

ㅇ우리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

ㅇ사회적기업

ㅇ청년벤처기업

ㅇ정부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

4. 추진일정



5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□ 신청기간: 2019. 5. 29.(수) ~ 6. 6.(목)

□ 접수방법: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(http://bi.hanbat.ac.kr)

※ 신청서류

-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첨부파일 다운로드)
- ②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
-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(예비창업자에 한함) 1부
- ④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⑤ 법인 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⑥ 최근년도 재무제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※ 허위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6. 문의처

□ 주관부서 :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□ 문의처

○손윤정 선임매니저 : 042-821-1698 / yjson@hanbat.ac.kr

ㅇ김유진 선임매니저 : 042-939-4740 / blue@hanbat.ac.kr

ㅇ김옥희 주임매니저 : 042-821-1696 / koh312@hanbat.ac.kr

○김연희 주임매니저 : 042-821-1697 / yh43874@hanbat.ac.kr

붙임 1

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료

구 분	산 출 내 역		비고
 국유재산사용료	매년 말 대학 관리팀의 비용 산정에 의해		년 1회
	익년 초 고지 후 징수		_ ' '
화재보험료		년 1회	
보육예치금	입주 시 보육비 6개월분		입주 시 납부
			졸업·퇴거 시 반환
보 육 비 (원/㎡/월) (전용면적 기준)	한밭인큐베이터타운	1년차 : 5,400원	
		2년차 : 6,100원	
		3년차 : 6,700원	
		4년차 : 7,600원	매월
		5년차 : 9,100원	(공동관리비 포함,
		6년차 이상 : 10,600원	VAT 별도)
	대덕산학융합캠퍼스/ 그린에너지관	1~3년차 : 7,600원	
		4~5년차 : 9,100원	
		6년차 이상 : 10,600원	
공공요금	전기, 수도 등 실비부과		매월

[※]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에 따라 별도로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며,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의 사용료 선납 기준이 적용됨으로 보육실 사용 시작하기 전에 동 사용료를 선납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입주계약 체결

붙임 2

창업보육센터 입주제외 대상 업종

-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
-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
- ③ 부동산업(70)
-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
- ⑤ 기타 서비스업(93)
-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
-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
 - 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, 수도사업
 - •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
 - ▶ 51~52 도매 및 상품중개업. 소매업
 - •60~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 및 항공운송업
 - •63 여행알선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
 - 74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(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.)
 - 75 사업지원서비스업(탐정, 경비, 인력공급업 등)
 - ▶ 76 공공행정.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 - ▶ 80 교육서비스업
 - 85~86 보건업, 사회복지사업
 - 88 기타 오락.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
 - 90 하수처리.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
 - 91 회원단체
 - 92 수립업
 - 95 가사서비스업
 - 99 국제 및 외국기관
 - 가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(동법 시행령 제4조)의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자
 - 나.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
 - 다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 - 라.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
 - 마.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
 - 바.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자